

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기정조례안 심사결과 보고서

1993년 9월 23일

의회운영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및 발의자 : 1993년 7월 20일 박병화 의원 외 22명

나. 회부 일자 : 1993년 7월 20일

다. 상정 일자

- 제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93.7.26)
; 심사의결보류 결정
- 제22회 남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93.8.4)
; 심사의결보류 결정
- 제23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93.9.23)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박병화 의원)

○ 제안설명 일자 : '93. 7. 23(제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 1차 회의)

○ 제안설명 요지

- 가능한 많은 의원들에게 각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도록써 짧은 기간내에 폭넓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현행 상임위원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개정코자 함.
- 의원의 임기가 4년임을 감안할 때 당초 의원들이 바라는 바와는 달리 다방면으로 많은 경험과 다양한 업무와 경험을 쌓기에는 상임위원의 임기 2년이 너무 긴 기간이라고 판단되어 1년으로 단축코자 하는 것이며,

- 우리 남구 의정의 진정한 발전과 우리 의원들의 개인적 발전을 위해 기회 균등을 가지며 의원 상호간의 화기애애한 단합과 화합의 차원에서 본 개정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겸토보고 요지(전문위원 김태식)

- 부산직할시 12개 구의회 현황을 살펴보면, 중구, 강서구(상임위원회 없음)를 제외한 10개 구의회 중 초대 상임위원의 임기에 한하여 의장단의 임기와 맞추기 위해 1년으로 시행한 구의회는 (서구, 동구, 영도구, 북구, 사하구, 금정구) 6개 구의회이며, 의장단의 임기와 상관없이 선임된 날로부터 2년 임기로 시행 중인 구의회는(남구, 부산진구, 동래구, 해운대구) 4개 구의회임.
- 대부분의 구의회 상임위원 임기는 조례상 2년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상임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할 경우 4개 상임위원회를 4년 임기동안 1년씩 전 상임위원회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현행대로 상임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할 경우에는 4년의 임기 중 2년간 동일한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됨으로써 한층 더 전문적이며, 심도있는 경험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지방자치법 제6절 위원회에 관한 법 (제50조 - 제54조)에는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으며,
- 동법 제54조(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전 조례에 대한 개정안은 법령상에는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4. 주요 질의 답변 요지

가. 제22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93. 7. 26)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이태홍 위원	김태식 전문 위원	<p>○ 부산의 12개 구의회 현황 중 에서 일부 구의회에서는 초대 상임위원회의 임기에 한하여 의장단에 맞추기 위해 1년 으로 하고 다음부터는 2년 으로 계속한다는 말이죠?</p>	<p>○ 그렇습니다.</p>
최진동 위원	박병화 위원	<p>○ 발의자 외의 의원들은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연구, 검토해 본 사례가 없고, 이 조례안이 본회의에 부의되면 많은 위화감 내지는 갈등의 소지가 많기 때문에 1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심도있게 연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하는데 발의자 의견은?</p>	<p>○ 상임위원회 설치 이전에 연구회 를 만들었을 때 1년씩 하기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연구회를 잘 운영해 왔음.</p> <p>○ 이 개정 조례안은 어느 특정인의 자리를 가지기 위해 개정하자는 뜻이 아니고 의원들이 지역 주민 들의 욕구와 다양한 민원에 대비 하여 다양한 경험과 폭넓은 지식 을 쌓아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자 는데 큰 뜻이 있음.</p> <p>○ 따라서 어떤 기분이나 위상, 갈등 의 문제는 성급한 선입감이라고 생각함.</p>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박남서 위원	김태식 전문 위원	<p>○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 심의 전에 본회의 의안으로 상정하고 후에 운영위원회에 심사 회부한 것은 전후가 바뀐 것 이 아닌가?</p> <p>○ 긴급사항은 일반적인 천재 지변이나 불의한 사고가 있을 때 긴급을 요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작위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은 긴급사항이라고 보지 않음.</p>	<p>○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16조에 보면 의사일정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또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의 일시만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p> <p>○ 긴급하다든지 안하든지 하는것은 각 개인의 보는 시각이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함.</p>

5. 토론 요지

가. 제1차심사 ('93.7.26 제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 찬성 토론 (손원익 위원)

- 22명이라는 우리 의회의 과반수가 넘는 다수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운영위에서 반대 또는 1개월 후 재심사 한다는 것이 과연 다수의원의 의사를 집약하는 방법인가에 대하여 의문이 되며, 의회의 원만한 운영 이란 다수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함. 의장단 임기와 상임위원의 임기를 맞추는 것이 의회 운영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며, 그렇게하자면 현재의 위원장, 간사, 상임위원 임기를 1년으로 줄이는 것이 타당 하다고 판단함.

○ 반대 토론

위원명	토 론 요 지
정환모	0.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우리 의원들의 개개인의 이해 관계가 있는 등 중요한 내용이므로 1개월 정도의 여유를 두고 심도 있게 심사해야 함으로 의결보류 하는 것이 좋겠음.
최진동	0.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다는 한달 이상의 시간을 가지고 각 의원들이 이 깊이 성찰해 보고, 다른 지역의 사례도 살펴보고 그렇게 공론을 거쳐서 대화와 양보를 통해 운영의 묘를 기하므로써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함.
박남서	0. 전체 위원장 직을 가진 분들이 사임을 한다면 조례 개정을 않고도 원만하게 해결될 것이 아닌가 생각함.

나. 제2차 심사 ('93. 8. 4 제22회 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

○ 찬성 토론 - 없음

○ 반대 토론

위원명	토 론 요 지
정환모	0.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번 운영위원회에서도 의결보류 한바 있으나, 의원 개개인의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결보류하는 것이 좋겠음.

위원명	토 론 의 지
박남서	<p>0. 만장일치로 가결한 조례를 시행한지 불과 1년 수개월만에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과 지식취득이라는 명분으로 임기2년을 1년으로 단축하기 위한 본 개정 조례안은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는데 1년이 타당한지, 2년이 타당한지, 또 법 도의상으로나 법 윤리에 합법성이 있는 것인지 심사 속고해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설득력이 없으며, 입법의 근본취지에 있어서도 합리성 보다는 자가당착에 빠질 우려가 있음.</p> <p>0. 국회, 광역의회, 대부분의 전국 기초의회에서도 상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고 현재 우리 조례도 임기2년으로 한 것은 상위법기관의 관행과 범주를 준용한 임기 2년의 대원칙에 따른 것임.</p> <p>0. 남구의회 역사에 오류를 범하는 누를 남기기 보다는 확증을 기하기 위하여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법제처에 질의하여 회신이 올 때 까지 유보하는 것이 좋겠음.</p>
정호기	<p>(의사진행 발언을 겸하여 발언함.)</p> <p>0. 운영위원 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발의의원이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를 계속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그분들의 적극적인 찬성토론도 없는 상태에서 이 안건에 대한 가부결정은 그렇게 급한 것이 아님.</p> <p>0. 이 안건은 더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지 않으면 엄청난 문제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좋겠음.</p>

다. 제3차 심사 ('93. 9. 23 제2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 찬성 토론 - 없음

○ 반대 토론 (정호기 위원)

- 그동안에 변호사, 학자, 공무원 몇분에게 자문을 구한 바 있으며, 그들의 의견은 한결같이 별로 소득도 있을게 없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이 조례가 의원활동에 큰 불편함이 있는데 왜 구태여 이것을 개정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으며, 꼭 임기를 1년 단위로 해야 한다면 2대에 들어서 하든지, 1대 임기말에 해도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하는 건해였음.

- 반대하는 의견은 다음과 같음

첫째,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장, 간사의 임기를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단축하는 소급입법 하고자 하는 것인데 소급입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거의 한 경우가 없으며, 있다고 하면 집권자가 정적 또는 자기 뜻에 따르지 않는 사람의 재거 수단으로 사용 했으며 그런 경우 대부분의 국민들은 분노하였음.

이 조례를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시행한지 채 2년도 안된 시점에서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생각하며 남구의회의 위상과 의원들의 위신을 생각해서라도 개정 조례안은 부결되어야 함.

둘째, 개정 조례안은 임기를 1년으로 하면 각 위원회를 한번이상 참여할 수 있다는 논리인데 일견 그럴듯해 보이나, 현재 운영위를 제외하고 나면 3개 위원회가 있는데 어차피 1년씩 돌아가면서 해도 3개 위원회 밖에 못하며, 남는 1년은 또 같은 위원회 중에서 1번 더하게 되어 결국 임기 2년과 같아지게 되므로 실익이 없고 또한 이번 개정 조례안대로 하면 차차기 위원회 재임기간은 불과 7,8개월 밖에 되지 못하는 모순점이 있음.

셋째, 각 위원회에 두루 참여해서 다양한 경험을 얻자는 명분은 의회라는 곳이 매우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임을 고려할 때 설득력이 없으며, 각 위원회에 골고루 참여해 보고 싶은 의원은 계속 출마하여 계속 당선되어 2대, 3대에 자기가 안해본 위원회에 들어가서 활동하면 될 것임.

넷째, 이번 개정 조례안의 동기가 꼭 그렇다고 표현할 수는 없으나 위원장, 간사 직에 대한 감투 배분의 의도가 짧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의문시 되며,

다섯째, 개인적 경험으로 볼 때 행정사무감사를 2번쯤 해보니까 뭔가 조금 알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번에는 집중적으로 확인도 좀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만약 개정 조례안대로 되어 위원회 소속이 변경 되었을 경우에 불과 2개월 정도의 위원회 경험으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를 제대로 해낼 것인가 우려되는 바가 큼.

-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 개정 조례안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생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임.

6. 심사 결과 :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

(출석위원 11명 전원이 정호기 위원의 반대 의견에 찬성하여 전원일치 의결)

7. 소수의견 묘지 : 제1차 심사 ('93. 7. 26 제22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찬성 토론 참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